

연금보험과 건강보험 지원 안내

1. 전국 회원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지원제도 해설

목적

-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경감
- 연금보험료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추진방향

- 농어업인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금보험료 계속 지원
- 농어업인의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지원

근거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1조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100분의 50이내의 금액을 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6조 (농림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 정부는 농림어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어업인이 부담하는 국민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3조 제2항
제3조 (계정의 구분) 이 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계정, 임업진흥사업계정 및 농어촌특별세사업 계정으로 구분한다.
- 국민연금법 부칙 제5조
제5조 (농어민의 가입에 관한 특례) 법률 제4909호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5년 7

월 1일 당시 농어민으로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는 같은 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70세에 달할 때까지 같은 법 제10조에 다른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지원대상자

- 지역가입자 중 농어업인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

농업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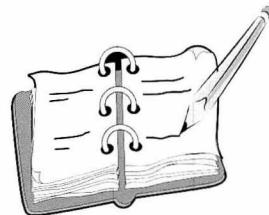
-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자

- 농,림,어업소득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자
- 사업등록자 다만, 각목중 하나만 해당되면 제외
 - 간이 과세자 ·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활동을 하는 자

신청요령

- 신청자 : 농어업인이 신청
- 신청방법 : 붙임의 ‘국민연금농어업인확인서’에 작성하여
 - * 1차 확인 : 거주지 또는 사업지 이장, 통장에게 확인
 - * 2차 확인 : 거주지 또는 사업지관할 시, 구청장 또는 읍,면장
- 관할 시, 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접 제출



2. 전국 회원의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제도 해설

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인인구 급증,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 경제적 능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국고에서 일정부분 지원
-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시책 및 추진방향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주민등록 기준)
 - * 농어촌 지역 : 군 및 도농복합시의 읍, 면, 시의 동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 준농어촌지역

농지법에 의한 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개발제한지역, 개발제한구역및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에의한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된 취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으로서 1종 전용주거지역 1종 일반주거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다만, 당해지역 주변에 소재하는 농경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하는 경우에 한함)

-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농림어업인에게 건강보험료의 50% 이내에 국고지원(농림부 28%, 보건복지부 22%)

근거 법령

-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
-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제43조
-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제3조 제2항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추진계획

2006년 599천 세대 1,358억원 → 2007년 532천
세대 1,271억원

신청요령

- 해당 회원의 불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1차로 거주지 이, 통장의 확인을 받고, 읍, 면, 동사무소별 농정업무담당자에게 2차 확인을 받아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출

제외 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50%를 이미 경감받고 있는 농업인
- 농어촌 및 준농어촌(읍,면,동)에 거주하나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건강보험료 경감대상 농 어 업 인 확 인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관계	
전 주 소	시 도	군 구	읍 면	리 마을	번 지
정 종사직종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		영농(여)규모 - 없는 경우 생략 가능	농 지 임야 이상 양식	ha ha ha ha
인 품수신장 인증판매액		원	영농(여) 종사업수	일	년 월 일
신설연 성명 : (인 또는 서명)					
1 차 확인	위의 자는 ① 농업인 ② 어업인 ③ 임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동(리) 통(이)장	성명 :
농 어 업 인 와 인	와 인 대 용				
	화인자(성명)				
(1) 주민등록번호(일자, 봄일자) (2) 주소, 동(읍면리), 가구(일자, 봄일자) (3) 주소 및 준농어촌(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기주(일자, 봄일자) (4) 주소 및 준농어촌(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구) -제1종 전환주거지역 기주 -제2종 일반주거지역 기주 (일자 불입재) -보전녹지지역 기주 -자연녹지지역 기주 ※ 4개 예시 중 1개만 일치하면 일치로 확인 -농어업인 거주지의 주변 농경지가 개발제한 구역 존지 여부(존지, 비존지) (5) 주소 및 농어촌 거주(일자, 봄일자) (6) 농어업 종사업여부(일자, 봄일자)					
상기와 같이 농어업인으로 확인합니다.					
시(군·구)		읍(면·동)장		(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제43조 및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및 제33조에 관련된 서식입니다. 210mm × 297mm

[별지 제19호의2서식] <신설2006.3.23>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성명	주민등록	자리 기관 증서
농어업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농어업인 해당일	년 월 일	
농어업인 구분	□농업인(축사, 임업포함)	□어업인
년간 판매액	원	
년간 종사업 수	월	
농어업 규모	농지 어선 양식	m ² ㏊ ha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에 따라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정인 (서명 또는 인)	
이상, 통장 확인	이상/통장	
상기인이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농어업인에 해당함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구청장/읍장/면장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 귀하		

210mm × 297mm(일반용지)

60g/m²

<뒷면>

기재 요령					
1. 농어업인 신고는 본인이 이(동)장에게 사실화인(1자)을 요청하여 확인을 받은 후에 읍·면·동에 신고(2자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농어업인이 아니면서 주가경감을 받은 경우는 추가경감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추가경감 대상자 범위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읍·면·동)에 기주(주민등록)하는 농어업인					
◇ 농업인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자 (비농업인은 분양 또는 임대받은 농어촌주택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축산인 범위도 농업인 2), 3)기준에 준함.					
◇ 임업인					
1) 3㏊미터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2)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3)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어업인					
1) 어업 경영을 통하여 연간 100만원 이상의 수산물을 판매하는 자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어업을 직업 경영하거나 어업자를 위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제비 또는 양식에 종사하는 자)					

210mm × 297mm